



계약자유의 의의

글 · 이춘산 공장장 (주)미래전자

계약의 의의

계약(契約)은 사법상(私法上)의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의사의 합의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즉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법률행위로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은 엄연한 하나의 법률행위이다.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발생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법률행위라 하는데, 계약은 그의 일부에 속한다.

계약시 적용되는 규정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에는 민법의 법률에 관한 여러 가지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민법 제3편의 계약은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데 한정되고 있는 이른바 채권계약(債權契約)으로서 공법상의 계약 및 물권계약, 그리고 준물권계약(準物權契約)과 신분계약(身分契約)과는 다르다.

공법상의 계약은 관할의 합의나 행정주체의

계약을 말하며, 물권계약은 지상권설정계약이나 저당권설정계약이다.

그리고 준물권계약은 채권양도와 같이 즉시 채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한 뒤에 채무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계약이고, 신분계약은 혼인이나 입양과 같은 계약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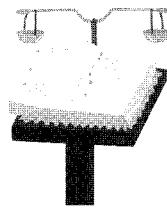
계약의 성립 요건

또 계약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보통 청약이나 승낙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고 있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다만 예외로서 청약만으로써 호텔방을 예약해둔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의사실현이라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되기도 한다. 또한 교차청약이라고 하여 쌍방의 당사자가 동일내용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된다.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그 법률



계약은 본래 사람 사이의 약속, 즉 약정(約定)이다.
법률에서도 일정한 사법상의 효과의 발생을 목적한
두 사람 이상 의사의 합치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또한 하느님이 구령(救靈)의 업(業)을 이루려고 인간에게 표시한 특별한 의사,
곧 언약(言約)이다.

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합의하고, 법이 그 합의를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하는 원칙이 있다.

이러한 원칙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하는데, 소유권 절대의 원칙 그리고 과실책임의 원칙과 함께 근대민법의 근간인 3대 원칙을 이루고 있다.

계약자유의 내용

계약자유의 내용으로는 체결의 자유·상대방 선택의 자유·내용결정의 자유·방식의 자유 등 4가지를 드는 것이 보통이다.

이 원칙은 자본주의의 초기에 특히 강조되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퇴색되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용결정의 자유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법률이 정한 조건이 아니면 계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료가 되고, 그 부분은 동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계약이나 근로계약과 같은 부합계약(附合契約)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자유는 사실상 박탈되고 있다.

부합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인 기업자가 계약 내용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상대방은 그 내용을 죽음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또 제정법상 형식의 자유가 명확히 박탈되고 있는 경우는 적은데, 현상광고(懸賞廣告)의 청약이나 단체협약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효력이 약하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느냐 아니면 체결하지 않는냐의 자유, 즉 체결의 자유에도 제한이 있다. 우편·철도·가스·수도와 같은 독점적인 기업이나 의사나 조무사 등의 공익적인 직무에서는 제약을 받는 수가 있다.

그리고 또 건물의 매수청구의 행사에서와 같이 사회 정책적인 제도에서도 계약을 받을 수 있다.

계약의 상대방을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이른바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재판이나 노동관계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